

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
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정이유

- 가. 한국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박정희대통령 생가 관리, 기념사업 진흥 등 업적을 보존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
나. 박정희대통령의 위대한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, 민족중흥과 문화 예술발전의 자취를 길이 보존함과 그 뜻을 널리 알리며, 향토예술의 발전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

2. 주요내용

- 가.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장려(안 제3조)
나.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(안 제4조)
다.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위탁 및 준용(안 제5조 ~ 안 제6조)

3. 조례안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, 제39조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다. 합 의 : 규제개혁T/F팀, 청렴정책팀과 합의
라. 기 타 : 해당없음

구미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한국 근대화를 이끈 박정희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박정희대통령의 생가 보존, 업적 홍보 등을 위하여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행사, 사업 및 활동의 지원·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법규와의 관계)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시책과 장려)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의 지원·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육성·보호하여야 한다.

제4조(재정 지원) 시장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박정희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선양하고 민족중흥과 문화예술발전의 업적을 유지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추모·기념사업
2. 박정희대통령 관련 기념자료 수집·발간
3.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공모전
4. 박정희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·편찬하는 사업

- 5. 박정희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
- 6. 기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위탁) ① 시장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 각종 행사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,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서 규정한 “비영리법인, 단체”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경상북도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(학술)단체를 말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,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구미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계 법 령

□ 문화예술진흥법

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(施策)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보호·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·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39조(국고 보조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소관 실·과		문화예술담당관실
입 안 자	과 장	김 구 연
	담 당	장 성 길
	담 당 자	김 해 규 (480-6633)